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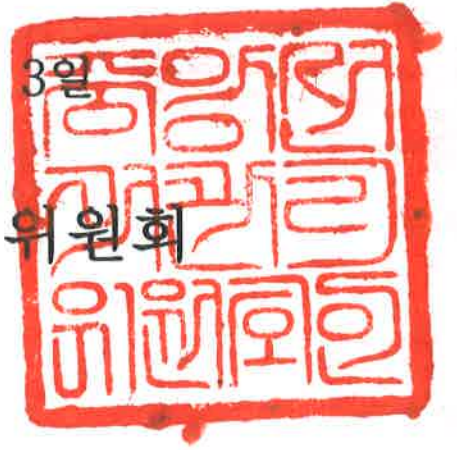
공고 제2023 - 248호

## 선거일 등 공고

2024년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  
있어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3일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
1. 선거명: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

2. 선거하여야 할 임원: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인

3. 선거일시: 2024. 1. 25.(목)

※ 총회 개최(13:30) →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→ 투·개표 실시(투표는 90분),  
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투표 실시

4. 투·개표장소: 농협중앙회 총회 회의장(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)

5. 선거인: 각 지역농(축)협·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

※ 선거인별 투표권수는 「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」 제67조 제1항에 의거 부가의결권 적용

6.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

가. 자격 및 등록요건: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및 「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」에 따른  
결격사유가 없는 자 ※ [별지] 참조

나. 신청기간: 2023. 12. 13.(수)부터 2024. 1. 9.(화)까지

※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(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다. 접수장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(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)

라. 신청방법: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규칙」 및 「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」 등에 따른  
구비서류 제출

마. 구비서류

| 서 류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량 |
|--|-----|
| ○ 필수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▪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|
| ▪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|
| ▪ 조합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|
| ▪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|
| ▪ 퇴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부  |
| ○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▪ 최종학력증명서(선거공보 등 인쇄물 게재시 제출)             | 1부  |
| ▪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|
| ▪ 이력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|
| ▪ 사진(최근 3개월 이내, 컬러 3cm×4cm) [전자파일 대체 가능] | 1매  |

※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 제출생략 가능

## 7.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

가. 자격 및 등록요건: 예비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요건과 동일

나. 신청기간: 2024. 1. 10.(수)부터 1. 11.(목)까지 [2일간]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
다. 접수장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(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)

라. 구비서류

| 서 류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량     |
|--|---------|
| ○ 필수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▪ 후보자등록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조합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후보자 추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~100부 |
| ▪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비영업사실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퇴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부      |
| ○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▪ 최종학력증명서(선거공보 등 인쇄물 게재시 제출)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이력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|
| ▪ 사진(최근 3개월 이내, 컬러 3cm×4cm) [전자파일 대체 가능] | 1매      |

마. 후보자 추천

○ 추천권자(추천인원): 회원조합장(50명 이상 100명 이하)

○ 추천방법: 중앙선거관위가 점인·교부한 추천서 서식에 의하여 회원 조합장의 추천을 받음.

○ 추천서 교부 신청

▪ 신청기간: 2023. 12. 13.(수)부터 2024. 1. 11.(목)까지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▪ 신청장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(327호)

## 8. 선거운동 방법

### 가.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

- 전화(문자메시지 포함) 및 정보통신망(전자우편 포함) 이용 선거운동
-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(농협중앙회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 한함)

### 나. 후보자의 선거운동

- 선거공보 발송
- 전화(문자메시지 포함) 및 정보통신망(전자우편 포함) 이용 선거운동
-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
-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
- 선거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

## 9. 선거공보 제출기한 및 장소

가. 제출기한: 2024. 1. 14.(일)까지

나. 제출장소: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(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)

※ 제출수량 등 추후 별도 공고

## 10.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권자: 선거권자

나. 열람기간: 2024. 1. 9.(화)부터 1. 14.(일)까지 중 농협중앙회가 정한 기간

다. 열람장소: 농업협동조합중앙회(☎ 02-2080-4574)

## 11. 기타사항

가. (예비)후보자 등록 문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(☎02-3294-8341)

나. 선거공보, 소견발표 및 투·개표 문의: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
(☎02-2274-0847, 1390)

다. 선거인명부 관련 문의: 농협중앙회 선거관리본부(☎ 02-2080-4574)

라. 위반행위 신고·제보 등 문의: 농협중앙회 내 상주 전담반 (☎ 02-2080-4300~4302)

[별지]

##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(예비)후보자 결격사유

| 근거   | 내용   | 비고 |
|--|--|----|
| 「농업협동조합법」<br>제49조제1항<br>및<br>「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」<br>제60조제1항 각호   |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|    |
|  |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|    |
|  |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|    |
|  |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|    |
|  |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|    |
|  |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4조제1항이나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4조에 규정된 개선(改選)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|    |
|  |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|    |
|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72조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<br>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·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·제61조<br>(허위사실 공표죄)부터 제66조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까지에 규정된 죄를<br>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70조(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)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|    |
|  |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,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(5백만원-보증채무 제외, 6개월)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<br>가.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<br>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<br>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<br>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「농업협동조합법」<br>제130조제1항  |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  |    |
| 「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」<br>제60조제1항11호  |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|    |
| 「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」<br>제74조제2항 각호  | 회장임기만료일 현재 본회 또는 회원의 상임인 임원(조합장은 제외한다)·직원, 본회 또는 회원의 자회사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및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, 조합감사위원장과 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)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|    |
|  |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회의 비상임임원·조합감사위원 및 본회의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  |    |
|  |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  |    |